#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92

발의연월일: 2021. 12. 3.

발 의 자:조명희·김석기·김성원

박대수 · 박덕흠 · 조경태

추경호 · 하영제 · 허은아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일부를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 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적 위기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현행등록면허세 감면특례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 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 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	
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	
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	
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	
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	
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	
록면허세를 <u>2021년 12월 31일</u>	<u>2025년 12월 31일</u> -
까지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